

부산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502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16.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3. 선고 2020가소956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7.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7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13,733,64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인 6,050,8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위 기각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일부인 3,377,040원(렌트비용 및 카드대금 상당의 편취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청구금액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으므로,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부분과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은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항소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5. 7.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가 2019. 9. 4.경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를 일본 동경에 있는 의류매장 관리자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경비를 주면 동경매장에 관리자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4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6. 16. 피고를 사기 혐의로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21. 7. 5. “피고가 채권을 대신 추심해준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6,960,040원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1. 12. 13. “피고가 채권을 대신 추심해준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6,960,0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기소하였다(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 2021년 형제17043호).
[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렌트비용 및 카드대금 상당의
편취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권을 대신 추심해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차량과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차량 렌트비용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인 3,377,040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상당액인 3,377,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5, 8, 9,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량과 카드를 제공받더라도 원고의 채권을 대신 추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과 카드를 제공하면 원고의 채권을 피고가 대신 추심해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차량과 신용카드를 제공받았고, 그 후 4개월간 원고의 차량을 사용하고,
원고의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3,377,040원(= 4개월 차량 렌트비용 1,800,000원 + C카드
사용금액 1,014,010원 + D카드 사용금액 309,120원 + E카드 사용금액 253,91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편취금액 상당액인 3,377,04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주문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목명균, 판사 이순혁

1) 수사결과통지서의 6,960,0240원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